[별지 제38호의2서식] 삭제 <2017. 3. 17.>

(뒤 쪽)

작 성 요 령

1. ⑥란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적습니다.
2. ⑫란은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증자등기일을 적습니다.
3. ⑮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